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김태호 · 김재섭
이종배 · 김예지 · 주진우
김소희 · 이인선 · 안상훈
엄태영 · 한지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도록 하면서,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,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,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등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기능과 성능”을 “기능·성능·식별”로, “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”을 “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”로 한다.

제55조제1항제2호 중 “폐쇄·차단”을 “폐쇄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폐쇄·차단”을 “폐쇄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<u>기능과 성능</u>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<u>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</u>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 ④ ~ ⑦ (생략)	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능·성능·식별</u> ----- ----- <u>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<u>폐쇄·차단</u> 등의 행위를 한 자	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폐쇄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</u>

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제56조(벌칙) ① 제12조제3항 본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<u>폐</u> <u>쇄·차단</u>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(생 략)	<u>치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6조(벌칙) ① ----- -----<u>폐</u> <u>쇄·차단 및 가림 시설의 설치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